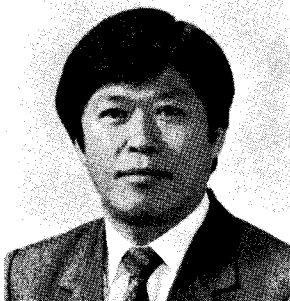


日本の 特許管理 教育考察(6)



安 鍾 喆
〈特許廳 指導課 事務官〉

目 次

I-1 工業所有權制度의 基礎知識
工業所有權制度(特許制度)의 目的

1. 特許制度의 基礎知識
2. 實用新案制度의 基礎知識
3. 意匠制度의 基礎知識
4. 商標制度의 基礎知識
5. 特許權等의 保護 對象
6. 特許廳에 있어서의 審査節次
7. 審判制度의 基礎知識
8. 權利의 發生에서 消滅까지
9. 特許權者의 義務
10. 特許(實用新案) 出願의 早期審査節次
11. 特許(實用新案) 出願의 審判事件에 있어서 早期審理의 節次等
12. 法改正 動向

I-2 國際出願의 活用

1. PCT의 概要
2. PCT의 意義
3. PCT 締約國一覽
4. 在來절차와 PCT절차와의 比較
5. 日本特許廳에 한 國際出願의 처리
6. FAX를 利用한 國際出願의 提出
7. 國際出願關係手數料
8. 優先權書類의 提出節次

〈고딕은 이번號, 명조는 지난 및 다음號〉
〈前號에서 계속〉

12. 法改正 動向

「特許法等의 一部를 改正하는 法律」(昭和62年 法律 第27號)〈昭和62年5月25日公布〉이 法律은 制度의 國際化·近代化의 一環으로서 多項制의 改善과 特許權存續期間延長制度의 新設을 中心으로 한 것이다.

1) 多項制의 改善

(1) 特許請求의 範圍를 請求項形式으로 쓰는 것으로 되었다 (特36條,昭和63年1月1日施行)

① 請求項에는 特許를 받고자하는 發明의

必須 構成要件만을 적는다.

② 하나의 發明에 대하여 多面的으로 自由로운 表現에 의한 複數의 請求項이 記載될 수 있다.

i) 從屬形式의 使用을 強制하고 있던 實施態樣項의 規定이 없어졌다.

ii) 同一 發明으로 된 것중에 포함된 레벨이 다른 發明도 請求項形式으로 自由로이 記載할 수 있다.

(2) 2以上の 發明을 하나의 願書로 出願할 수 있는 併合要件이 大幅 확대 되었다. (特37條, 昭和63年 1月1日施行)

(3) 2以上の 請求項에 관계된 特許 無效審判은 請求項마다 請求할 수 있다. (特37條, 昭和63年 1月1日施行)

(4) 實用新案의 경우에도 대체로 같다. 다만, 方法의 考案을 認定치 않는 實用新案의 性格上 하나의 願書로 出願할 수 있는 2以上の 考案은 同一 카테고리의 것에 한한다. (實5條, 6條, 37條, 昭和63年 1月1日施行)

2) 制度의 國際的調和를 위한 節次期間의 彈力化等

(1) 파리條約의 優先權을 主張하는 特許出願人의 證明書提出期限이 「優先日로부터 1年 4月以內」로 되었다. 改正前에는 出願日로부터 3月以內였다. (特43條, 昭和62年 6月1日施行)

(2) 特許異議申請期間이 出願公告日로부터 3月以內로 되었다. 改正前에는 2月以內였다. (特55條, 昭和63年 1月1日施行)

(3) 特許異議申請期間이 出願公告日로부터 5年(實用新案은 3年)이 경과하면 外國에 頒布된 刊行物을 理由로 할 수 없다는 規定(除斥 期間)이 廢止되었다. (特124條, 削除, 昭和62年 6月1日施行)

(4) 外國語로 된 PCT出願으로 優先日로부터 1年 7月 以內에 國際豫備審査請求를 하고 日本을 選擇國으로 한 것은 翻譯文의 提出期間이 優先日로부터 2年6月以內로 되었다. 改正前에는 1年 8月以內였다. (特184條의4, 昭和62年 12月8日施行)

(5) 實用新案에 있어서도 대체로 동일하다. (實9條, 13條, 38條削除, 實48條의 4)

(6) 意匠法에서는 (3)項에 關係서만이 同一하다. (意49條削除, 昭和62年6月1日)

3) 特許權在續期間 延長制度의 新設

이 制度는 所定의 條件을 만족시키는 醫藥, 農業關聯 特許發明에 대해서만 適用된다. 따라서 他分野의 特許權者에게는 關係가 없는 제도이다.

위에서 말한 特許發明을 實施하는 것이 藥事法이나 農業取締法等이 定하는 바에 따라 試驗이나 審査를 위해 登錄後 2年以上 司能하지 않았던 경우에 5年을 限度로 그 存續期間의 延長이 認定되는 制度이다. 存續期間 滿了前 6月까지 所定의 延長登錄出願이 必要하며 審査를 받게 된다. (特67條, 67條의2, 昭和63年1月1日施行)

4) 手數料等の 改正

特許料(實用新案登錄料), 審査請求料, 審判, 再審請求料등의 手數料가 昭和62年6月1日과 昭和63年1月1日로 나뉘어 施行되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 昭和63年1月1日以後의 出願에 대해서는 請求項形式으로 되고, 特許料등의 算出基礎도 徒來의 「發明의 數」로부터 「請求項의 數」로 변경되므로 해서 두갈래로 나뉘어 운영된다.

(2) 昭和62年12月31日以前의 特許, 實用新案出願과 意區, 商標에 대해서는 昭和62年6月1日부터 施行되는 것이 適用된다. (特107條, 實31條, 意42條, 商40條 및 特195條, 實54條, 意67條, 商76條)

5) 審判請求의 取下

審判請求는 審決確定前에는 언제라도 取下할 수 있게 되었다. 改正前에는 審理의 終結通知가 있는 後에는 取下할 수 없었다. (特155條, 實41條, 意52條, 商56條 昭和62年6月1日施行)

I-2 國際出願의 活用

特許協力條約(PCT : Patent Cooperation Treaty)

1. PCT의 概要

PCT는 外國出願의 容易化, 同一 發明에 대해서 多數國에 出願하는 경우에 出願人 및 各國特許廳의 努力 및 費用의 輕減을 도모할 目的으로 1970年에 採擇된 條約으로 工業所有權의 保護에 관한 파리條約以來의 획기적인 것이다.

이 條約은

- (1) 國際出願制度에 關한 實體規定
- (2) 條約의 運用에 關한 管理規定 및
- (3) 最終條項으로 大別할 수 있다.

그중主要한 部分은 (1)에 있으며 이곳에서 定하고 있는 節次는 國際出願, 國際調查 및 國際豫備審査의 3段階로 이루어진다. 이 가운데 國際出願 및 國際調查에 關한 節次(第1章)는 全部 國際出願에 對해서 필요한 절차이다. 國際豫備審査에 關한 節次(第2章)는 出願人의 選擇에 따라 行해지는 任意的節次이다. 各 締約國은 이 國際豫備審査에 關한 절차를 定하고 있는 第2章에 對해 留保할 수도 있다.(第64條(1))

또한 PCT는 國際出願의 節次面에 對해서 規定하고 있고 國際出願된 發明이 各國에 있어서 特許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에 對한 實體的 要件은 各國의 國內法令에 근거한 판단에 맡기고 있다.

2. PCT의 意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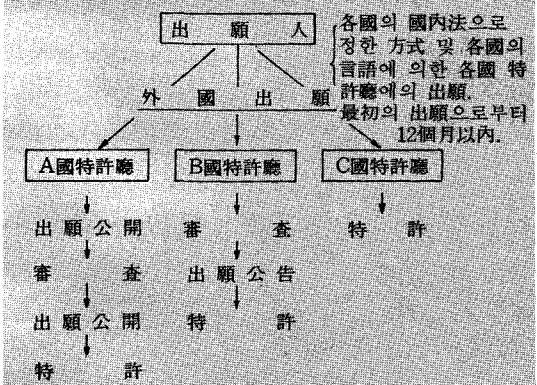
PCT加盟에 의해 外國에 의 出願이 容易하게 되고 外國에 있어서 特許權의 取得에 커다란 도움이 되는 동시에 國際間의 技術交流를 促進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資源이 빈곤한 나라가 今後로 技術立國, 貿易立國으로서 技術輸出이나 플랜트類로 代表되는 高度한 技術集의 商品의 輸出을 擴大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매우 有益한 條約이다. 또한 PCT는 特許分野에 있어서 開發途上國 援助를 行하는 것도 그 目的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點에 있어서도 意義가 깊은 條約이다.

3. PCT締約國一覽(1989年 1月 現在 41個國)

地 域	國 名	地 域	國 名
아메리카	바르바도스, 브라질, 美國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日本, 스리랑카, 호주, 大 韓 民 國, 북한
유럽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위스, 리히텐스 타인, 서독, 덴마크, 필란드, 프랑스, 영국, 헝가리,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유럽	노르웨이, 루마니아, 스웨덴, 소련, 불가리아
아프리카	네덜란드, 카메룬, 중앙 아프리카, 차드, 콩고, 가봉, 세네갈, 토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아, 수단, 베닌, 부르키나 ফ 소		

4. 在來節次의 PCT節次의 比較

(1) 在來의 節次



6. FAX를 이용한 國際出願의 提出
 特許協力條約에 따른 國際出願은 팩시밀리 (FAX) 장치에 의해 提出할 수도 있다.

(1) 팩시밀리番號
 (東京03)501-6803

(2) 接受時間
 ① 月曜日~金曜日 09:00~17:00
 ② 土曜日 09:00~12:00

7. 國際出願關係手數料

A. 國際出願手數料

(1) 日本國特許廳에 對하여 納付하는

手數料(特許印紙로 納付함, a와b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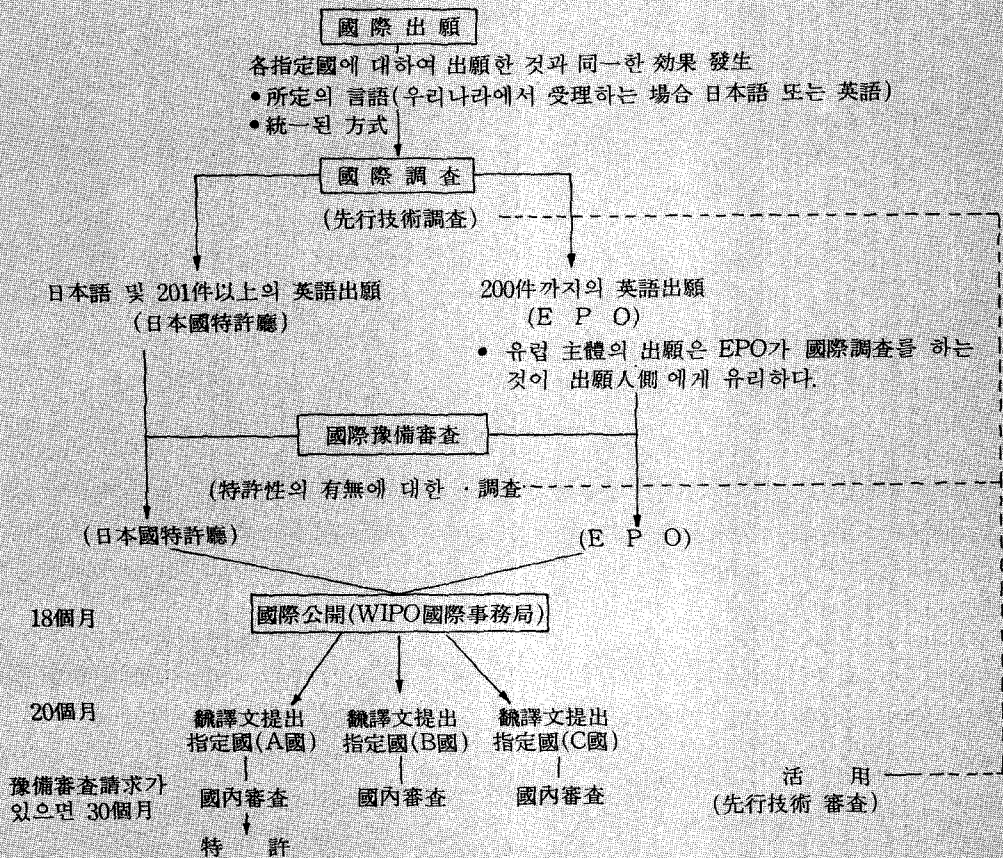
a. 送付手數料-國際出願1件마다
 16,000円)

b. 調査手數料-國際出願1件마다
 54,000円)

(但, 유럽特許廳에 의한 國際調査等を 받고자 하는 國際出願에 對해서는 下記의 (3)을 參照할 것.)

(2) 國際事務局에 對하여 納付하는 手數料 (國際手數料로 일컬어지는 것으로 國際事務

5. 日本特許廳에 한 國際出願의 처리



局的 銀行口座로 송금한다. a와 b가 있음)

a. 基本手數料

(i) 國際出願의 用紙枚數가 30枚以內的
경우 : 64,300円

(ii) 國際出願의 用紙枚數가 30枚를
超過하는 경우 : 64,300円에 30枚를 超過하는
用紙1枚마다 1,300円을 加算한 金額

b. 指定手數料

1指定國(群)마다 15,600円

最高限度額 156,000円

(10을 초과하는 指定國(群)에 대해서는
不用)

(3) 유럽特許庁에 納付하는 調査手數料
日本 特許廳은 受理官廳으로 하는 英語로 된
國際出願의 出願人은 上記 A-(1)-b에 記載
된 日本國特許廳에 對하여 納付하는 調査手
數料에 대신하여 유럽特許廳에 納付해야 할
調査手數料 171,100円을 EPO / JP-WIPO
名義의 銀行口座로 송금한다.

B. 國際豫備審査手數料

(1) 日本國特許廳에 對하여 納付하는 手數
料 (特許EP紙로 納付함)

予象備審査手數料 : 國際予備審査請求1件마
다 20,000円

(2) 國際事務局에 對하여 納付하는 手數料
(取扱手數料로 일컬어지는 것으로 國際事務
局的 銀行口座에 송금함)

取扱手數料 : 1件마다 19,700円에 國際豫備
審査報의 翻譯文作成을 필요로 하는 選譯國
의 各 言語마다 19,700円을 加算한 金額.

C. 手數料에 關係하는 其他 事項

(1) 銀行口座

a. 國際事務局的 銀行口座

- 口座의 所在地

(株)東京銀行 內幸町支店

東京都千代田區內幸町2丁目1番1號 飯野
Bldg. 內)

電話番號 (03)506-3856

- 口座의 名義 : WIPO-PCT, Geneva
- 口座의 種類 : 非居住者円普通預金
- 口座番號 : 0473286

b. 유럽특허청에 納付해야 할 調査手數料의
銀行口座

- 口座의 所在地

(株)東京銀行 內幸町支店

東京都千代田區 內幸町1番1號

飯野Bldg. 內

- 口座의 名義 : EPO / JP-WIPO
- 口座의 種類 : 非居住者円普通預金
- 口座番號 : 0862711

(2) 其他

國際出願關係의 手數料에 대해서는 이
외에 國際出願이나 國際豫備審査의 追加手數
料, 各種 手數料의 納付時期, 國際事務局的
銀行口座로의 송금을 증명하는 書面의 提出
等 여러가지 規定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下記의 國際出願室로 問議바람.

特許廳審査第1部 出願第1課 國際出願室
電話(代表)501-1511(交)4014

(直通)501-6803

8. 優先權書類의 提出節次

(1) 提出期間

優先日로부터 16個月以內 (但, 條約 第2
3條(2)에 規定하는 경우에는 處理 또는 審査
가 請求된 때까지

(2) 提出處

受理官廳(日本國特許廳) 또는 國際事務局

(3) 提出方法

日本國特許廳에 對하여 節次를 밟는
경우에는 다음 두가지 方法에 의해 행해진다.
다만 (2)의 경우에는 先出願이 日本 特許
廳에 對하여 된 特許出願 또는 實用新案登錄
出願에 한한다.

덧붙여 國際事務局에 對하여 節次를 하는
경우에는 「第14節, 國際事務局에 對한 節次」
를 參照바람.

① 優先權證明書を 添附한 「優先權書類提
出書」를 提出한다.

② 先出願의 寫本(先出願 1件마다 正副
各1通)과 「優先權證明願」(先出願 1件마다
1通)을 添付한 「優先權書類送付請求書」를
提出한다. ♣